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2155 |
|----------|------|

2021년 3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채유미 의원(찬성자 51명)
- 나. 제안일 : 2021년 2월 5일
- 다. 회부일 : 2021년 2월 9일
- 라. 상정일 :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3월 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채유미 의원)

가. 제안이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와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1. 2. 16. ~ 2. 23.)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의소집 요건을 규정하고(안 제7조제9항),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해당 심의 자문에 이해관계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호와 제2항 및 제3항 신설).
- 동 조례는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해 2012년 9월 제정하고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진단·관리 하여 왔음.
- 안 제7조제9항은 위원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의 소집 요건과 근거를 규정 하고, 회의소집 요구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⑨ <u>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최근 5년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정기회와 임시회의 소집일수가 매년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기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연 2회 이상 정기회 개최 요건은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로써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근까지 연 4회의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었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서면회의로 대체해 정기회가 2회에 불과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기회 개최일수 축소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최근5년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추진실적〉

| 연 도 | 추진 실적 |
|-------|---|
| 2020년 | 총 6회 (정기회 2회, 임시회 4회) - 4.22.(1차, 서면), 5.27.(2차, 서면), 6.4.(3차, 서면), 10.16.(4차, 대면) 10.21.(5차, 서면), 12.18.(6차, 화상) |
| 2019년 | 총 6회 (정기회 4회, 임시회 2회) - 4.5.(1차, 위촉장 수여식), 4.17.(2차, 서면), 6.21.(3차), 8.28.(4차,서면), 9.20.(5차), 12.20.(6차) |
| 2018년 | 총 4회 (정기회 4회) - 3.15.(1차), 6.21.(2차), 8.29(3차), 12.13.(4차) |
| 2017년 | 총 4회 (정기회 4회) - 3.21.(3기 위촉식 및 1차), 6.13.(2차, 워크숍), 9.13.(3차), 12.13.(4차) |
| 2016년 | 총 4회 (정기회 4회) - 3.9.(1차), 6.8.(2차), 9.21.(3차), 12.14.(4차) |

- 안 제9조는 현행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제척)와 제2항(기피), 제3항(회피)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제척(除却, exclusion) :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를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
 ※ 기피(忌避, Ablehnung)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
 ※ 회피(回避, Selbstablehnung) : 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 사건의 취급을 피하는 일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동 조례 제8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도 위원의 결격사유 외에,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두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심사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기준, 결격사유, 임기 및 연임제한을 규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2021.1) 권고사례〉

| 의뢰법령 | 문제점 및 권고안 |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문제점) 위촉위원의 자격 불명확, 임기규정 미비,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부재 등 심사·의결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저하 우려 |
| | (권고안) 심사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기준, 결격사유, 임기 및 연임제한을 규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연번 | 구분 | 성명 | 경력 | 비고 |
|----|-------------|-------|--|---------------------|
| 1 | 위 촉 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4기(시장추천) |
| 2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동남권NPO지원센터장 •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기획실장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 | 4기(비영리단체추천) |
| 3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국)전문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 4기(시장추천) |
| 4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조교수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 4기(시장추천) |
| 5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전문위원) 노무법인 지산 대표 (공인노무사) | 4기(비영리단체추천) |
| 6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갈등해결과대화 상임대표 (사)서대문사람숲 운영이사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 4기(비영리단체추천) |
| 7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국토해양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점검 평가 위원 | 3-4기(시장추천) |
| 8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전, 서울YMCA시민문화운동본부장 | 3-4기(비영리단체추천) |
| 9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4기(의회추천) |
| 10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경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 3-4기(의회추천) |
| 11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 3-4기(의회추천) |
| 12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 양천구 주민배심원 전, 양천구 신정6동장 | 4기(의회추천) |
| 13 | 당 연 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 2021. 1. 8. 인사발령 |
| 14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기획관 | |
| 15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소통기획관 | |

- 이에 따라 안 제9조제1항은 각 호를 신설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심의 관련 특수 관계를 배제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심사를 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right;">< 신 설 ></p> <p style="text-align: right;">< 신 설 ></p> <p style="text-align: right;">< 신 설 ></p> <p style="text-align: right;">< 신 설 ></p> <p style="text-align: right;">< 신 설 ></p> |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 안 제9조제2항은 심의안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할 수 있고,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p>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p> | <p>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p> |

| | |
|--|---|
| <p>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 <p>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
|--|---|

-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해관계자나 특수 관계자 등 부적격 위원을 심의 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근 5년간 위원회의 주요안건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안 위원회의 기능(제8조)과 거리가 먼 사항을 심의하고 실질적인 갈등조정 사항에 대한 실적이 부족하며 갈등조정심의위원회 역할이 미약한 바, 실질적인 갈등 조정에 대한 심의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주요안건 및 논의내용

(2016년) (정기회 4회)

| 일 시 | 주요안건 | 주요 논의내용 |
|---------------------|---|--|
| 1차 정기회 (16.3.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분과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분과위원회 추진경과 보고 ○ 갈등조정담당관 신년 업무 보고 (2016년 신규사업 위주) ○ 갈등조정 현안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 향후 운영 논의 - 열린대화, 갈등관리실태평가 등 ○ '16년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 간선도로 횡단보도, 가림시장 현대화 ○ 사전협의조정제도 강화방안 |
| 2차 정기회 (16.6.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발표 : 갈등관리체계의 경제적 비용 및 효과산출 연구 ○ 업무 보고 : 갈등관리 실태평가, 사전협의조정제도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갈등조정제도 확립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 전원 찬성 ○ 현안 토론 : 열린대화, 2016 |

| 일 시 | 주요안건 | 주요 논의내용 |
|-----------------------|--|---|
| | 공공갈등진단, 갈등실무자공동연수, 당면갈등현안 등 | 국제갈등관리컨퍼런스 ○ 연간 일정 : 연간회의 및 2기 갈등관리심위 백서제작 일정 |
| 3차 정기회 (16.9.21.) | ○ 업무 보고 - 2016 갈등국제컨퍼런스 개최, 갈등관리실태평가, 갈등교육 콘텐츠 확충, 열린대화, 현안 갈등조정업무 보고 | ○ 안건 심의 - 주거사업지 인근 등 영향분석 심의 ○ 2기 활동보고서 제작에 관한 논의 - 주 백서수요자를 위한 추진방향논의 - 원고구성 방안 논의 |
| 4차 정기회 (16.12.14.) | ○ 갈등조정담당관 업무보고 - 갈등국제컨퍼런스, 갈등관리 시민설문, 우수사례발표회 결과 등 | ○ 2기 활동결과 공유 - 2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및 기타활동 결과 공유 ○ 위원회 발전방향 논의 -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발전방향 논의 |

(2017년) (정기회 4회)

| 일 시 | 주요안건 | 주요 논의내용 |
|-----------------------|--|---|
| 1차 정기회 (17.3.21.) | ○ 2017년도 갈등조정담당관 업무 계획 보고 - 시민의견수렴 방안 개선을 위한 학술 용역 - 열린대화 결과 공유 방안 모색 - 갈등백서 매뉴얼화 및 대상 다각화 ○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 위촉 |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 정립 - 갈등조정 사업에 대한 자문, 조정역할 -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 2차 정기회 (17.6.13.) | ○ 갈등 현안 사항 보고 및 자문 - 갈등리포트 제작 보고 -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열린대화 - 2017 서울갈등포럼 추진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 갈등관리 강화 방안 논의 - 갈등조정추진 현안 사업에 대한 조정 방향 | ○ 북촌 마을 갈등조정 사례 연구 - 현장 워크숍 진행 - 갈등 조정 과정 중 특이사항 등 공유, 자문 |
| 3차 정기회 (17.9.13.) | ○ 업무 보고 - 2017 갈등포럼 준비 사항 최종 보고 - 공공갈등 조례 개정 사항 및 자치구 협력 사업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 - 주요 갈등 영향분석 및 조정 현안 | ○ 서울시 주요 갈등 현안 공론화 절차 도입 논의 |
| 4차 정기회 (17.12.13.) | ○ 선제적 갈등관리시스템 운영계획 및 추진 현황 보고 | ○ 2018 공론화 사업 추진 방향 논의 |

| 일 시 | 주요안건 | 주요 논의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분기 주요7 갈등조정, 영향분석 사항 보고 및 자문 ○ 2017. 갈등예방 및 해결 우수사례 발표회 결과 보고 ○ 2017 갈등관리실태 평가 결과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 공공갈등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논의 |

(2018년) (정기회 4회)

| 일 시 | 주요안건 | 주요 논의내용 |
|-----------------------|---|---|
| 1차 정기회 (18.3.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공공갈등 진단추진계획보고 ○2018 서울형공론화 사업 추진 현황 보고 ○갈등저감을 위한 행정 절차 개선 용역 결과 보고 ○2018 갈등관리 역량 강화 추진 계획 보고 ○갈등관리현안 사항 보고 (조선선재물류센터 등 3건) ○2018 서울국제갈등포럼 관련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저감 행정 절차 개선에 대한 조직내부 논의 추진 (본청, 자치구 직원 토론회 개최) ○갈등관리심의위원 소속 단체별 세션 구성 계획 및 주제, 내용 구성 관련 논의 |
| 2차 정기회 (18.6.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공공갈등 진단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서울형 공론화 사업 현황 보고 ○국제갈등포럼 추진 현황 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실무자 공동연수 추진 결과 보고 ○갈등 저감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 개선계획(안)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저감을 위한 사전 이행 절차 개선 계획에 따른 갈등 관리심의위원회의 예비 갈등 영향 평가 실시 여부 심의결정에 대한 구속력 확보 문제 및 추진 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된 매뉴얼 개발 필요 (용역추진 : 18.7~10월) ○국제갈등포럼의 주제 관련 대다수의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변경 필요 (회복적도시 →포용적도시) ○서울형공론화 의제로 청년 주거 복지 내용 검토 |
| 3차 정기회 (18.8.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조정 현안 보고 ○행정안전부 상생협력, 갈등관리 경진대회 우수 시책 제출 ○2018 서울 국제 갈등 포럼 추진 현황 보고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의제 관련 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보다 보편적 의제 선정이 필요하며, 쟁점이 명확한 의제 구성이 필요 (재원 마련 방안 등) |
| 4차 정기회 (18.12.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 조정 현안 보고 ○2019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이행절차 개선 사업과 관련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전문 심의 기능을 통해 |

| 일 시 | 주요안건 | 주요 논의내용 |
|-----|------|----------------|
| | |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 |

(2019년) (정기회 4회, 임시회 2회)

| 일 시 | 주요안건 | 주요 논의내용 |
|----------------------------------|---|--|
| 1차 정기회 (19.4.5.) 4기 위촉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도 갈등 관리 종합 계획 보고 ○2019년도 서울 갈등포럼 추진 방안 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기 위원회 구성 이후 첫 회의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주요 기능 및 갈등조정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한 포럼 추진단을 구성하여 포럼 주제, 구성 등을 결정하고 자치구에 대한 갈등관리시스템 확산을 위해 자치구 참여 세션도 포함하여 구성 |
| 2차 임시회 (19.4.17.) 서면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생 규제 정책 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 필요성 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영향분석 실시 승인 (구체적인 갈등 사례 조사가 포함될 것) |
| 3차 정기회 (19.6.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도 주요사업 갈등진단 추진 현황 보고 ○우리동네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 사업 추진 현황 보고 ○2019년도 갈등 포럼 추진 현황 보고 ○갈등 관리 교육 동영상 제작 추진 현황 보고 ○‘갈등 조정관’ 신규 임용 추진 현황 보고 ○2019년도 서울시 갈등관리 전문가 집담회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갈등 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별 대응계획에 대해 별도 보고하고 연도별 중점관리 사업의 관리 등급 추이에 대한 자료도 관리할 필요 있음 ○과정 이수 후 자원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후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실시할 것 ○교육 동영상 제작 후 자치구에 배포, 자체 교육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권고제 신설 제안 건과 관련, 구체적인 절차, 대상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함 |
| 4차 임시회 (19.8.28.) 서면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필요성 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영향분석 실시 승인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써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주민 대상 당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식 조사가 필요함) |
| 5차 정기회 (19.9.20.) 신규위원 위촉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 필요성 심의 ○2019 서울 갈등 포럼 추진 현황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 승인 - 갈등 현안은 성격상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조정이므로 구체적인 |

| 일 시 | 주요안건 | 주요 논의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 서울 공론화 추진 현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권고제 추진 방안 논의 (결원 발생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식 병행) | <p>조정 등을 거치지 않는 이상 어느 한쪽에 치우친 권고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갈등관리의 절차 상 갈등영향분석, 조정 등 갈등관리프로세스의 적기 관리가 요청된다면</p> <p>갈등관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도 목적 실현이 가능함.</p> <p>(권고제 실시 불요)</p> |
| 6차 정기회 ('19.12.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결과 보고 ○2019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공론화 추진현황 보고 ○동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갈등영향분석 중단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의견 경청 및 2차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플랫폼노동이라는 주제의 구체화 및 숙의과정의 내실을 기한 것으로 보임. 향후 관련분야에 대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이 요청됨 ○향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3차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면 보다 구체화된 조성 방안에 대한 의제가 논의되어야 함 |

(2020년) (정기회 2회, 임시회 4회)

| 일 시 | 주요안건 | 주요 논의내용 |
|----------------------------|---|---|
| 1차 임시회 ('20.4.22.) 서면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 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영향분석 실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주민피해 실태조사 방법 고려한 갈등해소 방안 제시 필요 - 향후 주민기피시설 사업 추진 관련 갈등관리 프로세스 마련과 관련분야 매뉴얼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2차 임시회 ('20.5.27.) 서면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심의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조사 관련 자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영향분석 실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제고와, 주민과 자치단체와의 신뢰 관계 형성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인식조사 설문내용 검토 및 의견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문항이나 응답항목과 관련하여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가치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용어는 대체하거나 삭제할 필요 |
| 3차 임시회 ('20.6.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자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

| 일 시 | 주요안건 | 주요 논의내용 |
|--------------------------------|---|--|
| 서면회의 | | 일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
| 4차 정기회 (’20.10.16.) 대면회의 | ○주요 갈등관리 업무보고 ○주요 현안 토론 : 2020 서울공론화 사업 추진현황 및 2021년 공론화 의제 선정 논의 (시의회 상임위 변경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식 병행) | ○주요 갈등관리 업무 현황 - 2020년 갈등진단 및 중점관리사업, 2020 서울 갈등포럼, 공공갈등 예방·해결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추진현황 - 주요 갈등 현안 사업(강서 어울림플라자 갈등조정 등 8건) ○2021년 공론화 의제 선정 논의 - 2020 서울 공론화 의제로 생활폐기물(쓰레기) 관련 선정은 시의적절하며 2021년 공론화 의제로도 계속해서 심화, 발전시켜 유의미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론화 사업이 되길 바람 |
| 5차 임시회 (’20.10.21.) 서면회의 | ○지하차도 건설 갈등관리프로세스 구축 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심의 | ○지하차도 건설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갈등관리 매뉴얼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길 바람 |
| 6차 정기회 (’20.12.18.) 화상회의 | ○ ’20년 갈등조정담당관 업무추진현황 보고 ○ ’21년 갈등조정담당관 업무계획 보고 | ○ 주요 추진사업 현황 보고 관련 자문 ○ 갈등관리 추진방향 점검 및 제언 ○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모색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채유미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215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채유미 의원(1명)

찬 성 자 : 강대호, 권수정,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노승재,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유 용, 이경선, 이광호,
이상훈,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정진철,
최 선, 최웅식, 최정순,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의원(51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절차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었는바, 이러한 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와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회의 소집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 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p>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⑨ <u>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p> | <p>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p> |
| < 신 설 > |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p> |
| < 신 설 > | <p>2. <u>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u></p> |
| < 신 설 > | <p>3. <u>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u></p> |
| < 신 설 > | <p>4. <u>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u></p> |

< 신 설 >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신 설 >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